

특정감사

감사결과보고서

-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 -

2013. 11.

감사원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특정업무경비 기본 현황	3
1. 특정업무경비 예산편성 연혁	3
2. 특정업무경비 편성 목적	4
3. 특정업무경비 집행 관리	5
4. 특정업무경비 예산 규모	7
III. 감사결과	8
1. 기관별 집행실태 점검 총괄	8
2. 문제점	25
1) 특정업무경비 집행 부적정	26
2) 치안활동비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불합리	33
3) 특정업무경비 집행 총괄·관리 미흡	37
[별표]	40

표 목 차

[표 1]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의 편성 목적 비교	4
[표 2] 특정업무경비 예산 및 일반회계 비율	7
[표 3] 감사대상기관의 특정업무경비 예산 편성 및 집행액	7
[표 4] 특임장관실의 특정업무경비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	10
[표 5] 국세청의 특정업무경비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	11
[표 6] 법무부의 특정업무경비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	12
[표 7]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	13
[표 8] 안전행정부의 특정업무경비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	14
[표 9] 소방방재청의 특정업무경비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	15
[표 10] 농림축산식품부의 특정업무경비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	16
[표 11]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	17
[표 12] 경찰청의 특정업무경비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	18
[표 13] 헌법재판소의 특정업무경비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	19
[표 14] 대법원의 특정업무경비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	21
[표 15]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	23
[표 16] 치안활동비 예산편성 연혁	34
[표 17]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단가 변동표	35

그림 목차

[그림 1] 특정업무경비의 예산편성 연혁	3
[그림 2] 특정업무경비의 집행대상 및 방법	5

I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참여연대(대표 ○○○)에서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1)가 된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하여 2013. 2. 9.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 등 12개 기관의 특정업무경비 집행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이를 점검,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특정업무경비 집행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제도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였다.

참여연대의 감사청구사항 주요 내용

- ① 특임장관실: 정무직과 기능직을 제외한 모든 직원에게 월정액과 실지급액을 나누어 지급
- ② 국세청: 특정업무경비로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 ③ 법무부: 매년 공익법무관 특정업무경비를 과다 편성하여 예산 불용
- ④ 검찰청: 각 지검 부서별로 월 200만 원 지급
- ⑤ 안전행정부: 2010년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단장에게 월 50만 원씩 지급
- ⑥ 경찰청: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치안활동비로 월 17만 원 지급(공무원 수당으로 전환 필요)
- ⑦ 소방방재청: 특정업무경비를 특정 부서·직렬·직급의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 ⑧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원에게 월 45~55만 원 지급
- ⑨ 감사원: 정무직 감사위원 6명에게 매월 50만 원을 심의활동비로 지급
- ⑩ 헌법재판소: 특정분야 업무와 무관한 헌법재판연구관에게 특정업무경비 지급
- ⑪ 법원: 특정업무경비를 사용이 금지된 경조사비에 사용
- ⑫ 국회: 상임위 활동 비용으로 월 500~600만 원 지급

1)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매월 300~500만 원씩 총 3억 2,000만 원의 특정 업무경비를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논란이 되자 결국 후보자에서 사퇴하는 한편,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13년 2월 참여연대는 □□□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였음

2. 감사 대상기관 및 범위

이번 감사에서는 참여연대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위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를 점검하였으며, 특정업무경비 집행의 적정성 제고 및 제도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였다.

3. 감사 중점 및 방향

이번 감사에서는 참여연대에서 감사를 청구한 사항을 포함하여 헌법재판소 등 12개 기관의 최근 6년간(2008~2013년)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를 분석하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2013년 2월, 기획재정부)이 강화된 점과 감사자료가 방대한 점 등을 감안하여 2013년 1~3월의 특정업무경비 집행 관련 지출증빙을 표본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기관에 대해서는 점검대상기간을 늘려 2012년의 특정업무경비 집행이 적정하였는지도 점검하였다.

이와 동시에 특정업무경비 부당 집행 등이 장기간 이루어져 잘못된 관행으로 고착되어 왔고 이에 따라 다수가 관련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근본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다.

4. 감사 기간 및 인원

2013. 4. 8.부터 같은 해 4. 19.까지 10일간 헌법재판소 등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예비조사(감사인원 7명)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 6. 17.부터 7. 5.까지 15일간 행정·문화감사국 제1과장 등 13명이 실지감사를 하였다.

그리고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 질문·답변과정을 거치는 등 의견을 수렴한 후 감사원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3. 11. 28. 감사위원회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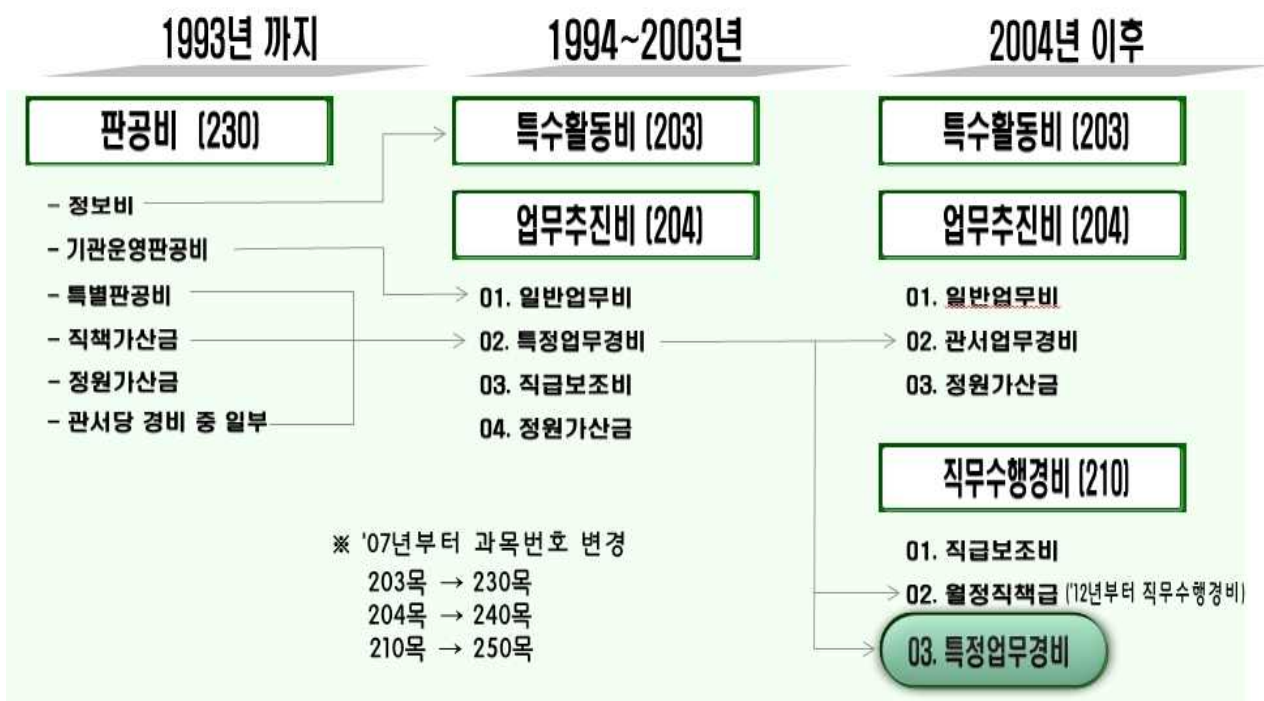
II. 특정업무경비 기본 현황

1. 특정업무경비 예산편성 연혁

정부에서는 [그림 1]과 같이 1993년까지 판공비 1개 비목 중 직책가산금 세목에 특정업무경비를 포함시켜 편성·집행하여 오다가 1994년 이후에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2개 비목으로 분리하고 업무추진비 비목에 일반업무비, 직급보조비, 정원가산금과 함께 특정업무경비를 편성·집행하였다.

그리고 2004년에 기존 특정업무경비 중 관서업무경비는 업무추진비 비목에 그대로 두고 월정직책급과 특정업무경비는 직무수행경비 비목으로 분리·편성한 후 커다란 변화 없이 2013년 6월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림 1] 특정업무경비의 예산편성 연혁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2. 특정업무경비 편성 목적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통보하는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표 1]과 같이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 감사, 예산 등 특정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조직 또는 사업 단위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업무추진비는 사업 추진(외빈초청 경비, 공식회의 및 행사경비 등) 및 관서업무 수행(유관기관 업무협약, 당정협약, 언론인 간담회, 중무식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고,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특정한 업무수행(사건수사, 정보수집, 각종 조사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른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의 편성 목적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업무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 감사, 예산 등 특정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직 단위 또는 인원에 따라 일정액을 계상하여 지급하는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추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연회비 등과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직원간담회 개최 등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수사, 정보수집, 각종 조사활동 등 특정한 업무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다른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편성)

자료: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과거 관공비 비목에 뿌리를 두고 있는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중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는 산출근거와 용도를 명시하여 편성되는 반면에 특수활동비는 구체적인 용도를 밝히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세부내역 없이 총액만 계상하여 편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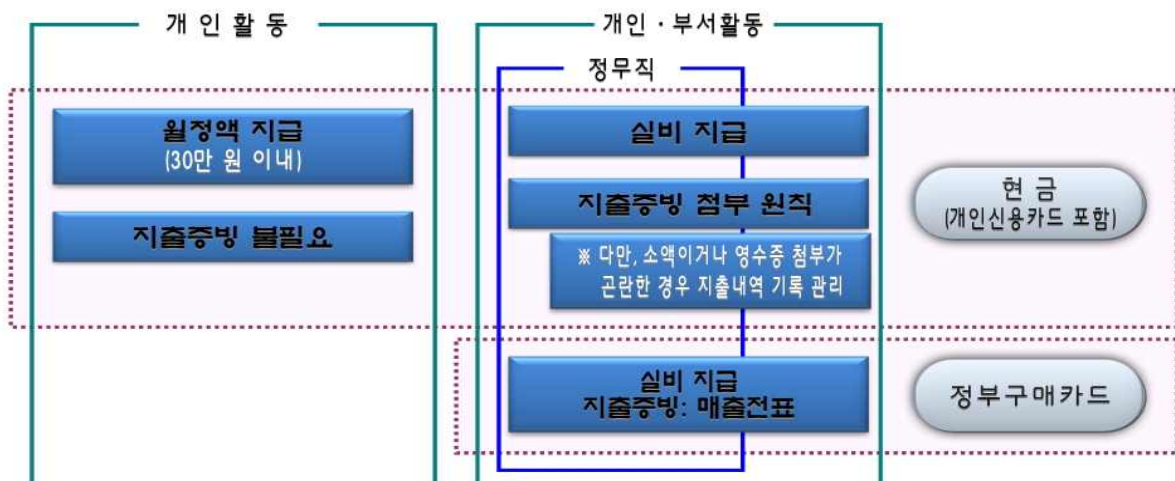
3. 특정업무경비 집행 관리

특정업무경비는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시달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특정업무경비 세부집행방법(이하 “특정업무경비 집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하는데 지출증빙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개인별 월정액 지급과 지출증빙 등의 구비가 필요한 실비 지급으로 구분된다.

특정업무경비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인당 매월 30만 원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정액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보수 또는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지급과 구분하여야 하며, 정무직이나 특정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림 2]와 같이 월정액 지급 외의 경비로 추가적인 소요가 발생한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지출증빙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소액이거나 영수증 등 지출증빙을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 지출내역을 기록·관리하고, 감독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2] 특정업무경비의 집행대상 및 방법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2013년 1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같은 해 2. 1. 지출증빙 첨부
가 곤란한 경우 지급내역에 지급일자, 금액,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부구매카드²⁾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지급을 금지하
며, 지급소요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정업무경비 집행요건 강화지침」을 마련·통보하였다.

한편 특정업무경비와 유사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의 집행지침을 비교해 보
면 업무추진비는 정부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데 집행목적·일시·장소 등을
지출증빙에 기재하여야 하고, 건당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및 성
명을 지출증빙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특수활동비는 개별 업무특성에 따라 지급대상·방법·시기 등을 달리
집행하되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집행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다.

2) 정부구매카드는 클린카드를 말하며, 유흥·위생·레저·사행업종 등 의무적 제한업종과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
가 선정한 제한업종에 사용할 수 없고, 업무를 하지 않는 법정 공휴일 및 토·일요일, 23시 이후에는 사용 불가

4. 특정업무경비 예산 규모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표 2]와 같이 2011년 6,284억 원, 2012년 6,473억 원, 2013년 6,524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반면에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0.30%, 2012년 0.29%, 2013년 0.28%로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2] 특정업무경비 예산 및 일반회계 비율

(단위: 억 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특정업무경비(A)	6,284	6,473	6,524
일반회계(B)	209조 9,303	223조 1,384	236조 2,253
비율(A/B)	0.30	0.29	0.28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 중 이번 감사대상인 12개 기관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표 3]과 같이 2013년 5,753억 원으로 전체 특정업무경비 6,524억 원의 88.2%를 차지하고 있고 기관별로 보면 경찰청 4,433억 원, 국세청 479억 원, 대검찰청 353억 원 순이다.

[표 3] 감사대상기관의 특정업무경비 예산 편성 및 집행액

(금액단위: 억 원)

기관명	2009		2010		2011		2012		2013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계	5,223.5	5,173.5	5,369	5,304	5,573	5,475	5,713	5,668	5,753	1,668.3
경찰청	4,159	4,125	4,247	4,191	4,359	4,286	4,404	4,370	4,433	1,372
국세청	461	456	461	458	497	483	501	499	479	108
대검찰청	228	229	271	272	309	309	331	331	353	82
법원	170	165	174	169	176	171	180	175	181	41
국회	111	105	112	110	123	117	177	174	178	37
법무부	31	30	32	31	31	31	40	40	48	11
감사원	26	26	30	30	35	35	36	36	39	10
농림축산식품부	16	16	17	17	17	17	16	15	16	2
헌법재판소	8	8	10	11	10	10	11	11	10	2
안전행정부	8	8	7	8	8	8	9	8	8	2
소방방재청	5	5	5	5	5	5	5	6	5	1
특임장관실	0.5	0.5	3	2	3	3	3	3	3	0.3

주: 2013년 집행액은 3월 말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기획재정부 등 제출자료 재구성

Ⅲ. 감사결과

1

기관별 집행실태 점검 총괄

□ 감사청구 대상 12개 기관 중 특임장관실 등 8개 기관은 개인별 월정액 한도를 준수하고 실비 집행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지출증빙으로 첨부하는 등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하고 있었고 참여연대에서 감사청구를 통해 제기한 문제점은 2013년 6월 감사일 현재 시정·개선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있었다.

- ① **특임장관실**: 참여연대에서 정무직과 기능직을 제외한 모든 직원에게 월정액과 실지급액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고 제기했으나 점검결과 특정업무경비를 지급받은 모든 직원이 특임활동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여 특정업무경비 지급 대상에 해당
- ② **국세청**: 참여연대에서 특정업무경비로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제기했으나 점검결과 2011년 역외 정보수집활동비 예산으로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특정업무경비 집행지침에 맞지 않으나 국회로부터 주의요구를 받았고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음
- ③ **법무부**: 참여연대에서 매년 공익법무관 특정업무경비를 과다 편성하여 예산을 불용하였다고 제기했으나 점검결과 2009년과 2010년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국방부의 공익법무관 선발인원 확정기 예산 편성시점보다 늦어진 데 따른 것으로 2011년 이후 이와 같은 문제를 시정, 불용액이 점차 감소
- ④ **검찰청**: 참여연대에서 각 지검 부별로 월 200만 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였다고 제기했으나 검토결과 이는 법무부에서 각 지검 부별로 소요경비를 실비 지급한 것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지출증빙으로 첨부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음
- ⑤ **안전행정부**: 참여연대에서 2010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단장에게 월 80만 원씩 지급했다고 제기했으나 점검결과 2010년까지 위원장에게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여 위 지침을 위반한 것에 대해 국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 이를 시정(단장은 매월 30만 원 지급, 지침 준수), 이후 유사사례 발견 못함
- ⑥ **소방방재청**: 참여연대에서 특정업무경비를 특정 부서, 직렬, 직급의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제기했으나 점검결과 예산편성 활동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특정업무경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지급,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음
- ⑦ **농림축산식품부**: 참여연대에서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원에게 월 45~55만 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였다고 제기했으나 점검결과 2011년까지 성과급 및 정액연구비를 특정업무경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국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 이를 개선(2012년부터 기타직 보수예산에서 성과급 등 지급)
- ⑧ **감사원**: 참여연대에서 정무직 감사위원 6명에게 매월 50만 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였다고 제기했으나 점검결과 2011년까지 매월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소요가 발생할 때마다 현금으로 지급하다가 2012년부터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고 그 집행내역을 작성·관리하도록 개선

□ 경찰청 등 나머지 4개 기관의 경우 2013년 1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를 계기로 특정업무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나 잘못된 관행이나 불합리한 집행지침으로 개인별 월정액 한도를 초과하거나 정당 집행 여부를 알 수 없는 지출내역을 구비하는 등의 문제점³⁾이 있었다.

- ① **경찰청**: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재정요원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1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1990년부터 지급한 수당이라면서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치안활동비로 매월 17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개인별 월정액 한도(30만 원)를 1만 원에서 17만 원을 초과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위 활동비의 연혁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 필요(참여연대에서는 치안활동비의 수당 전환 필요성을 제기)
- ② **헌법재판소**: 실비 집행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여 지출증빙 첨부 등의 집행비율이 2012년 33.0% (279/845백만 원)에서 2013년 1/4분기 40.6%(67/165백만 원)로 7.6%p 증가했으나 나머지는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게 작성된 지출내역 등으로 관리, 정당 집행 여부를 알 수 없게 되는 등의 문제점 여전
 - 한편, 참여연대에서 특정분야 업무와 무관한 헌법재판연구원에게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였다고 제기했으나 점검결과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 등과 관련하여 법조인,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각종 정보수집, 자료조사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음
- ③ **대법원**: 2013년 3월과 4월 ‘자체 집행계획’을 개선하여 기존에 1인당 월정액 최대 170만 원까지 지급하던 것을 3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였으나 행정착오 등으로 월정액 한도를 12만 원에서 15만 원을 초과하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교육파견자에게 월정액(매월 22~3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문제점 상존
 - 실비 집행에서도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 노력하여 지출증빙 첨부 등의 집행비율이 2012년 8.7%(1,042/12,032백만 원)에서 2013년 1/4분기 20.6%(560/2,722백만 원)로 11.9%p 증가했으나 나머지는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게 작성된 지출내역 등으로 관리, 정당 집행 여부를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한편, 참여연대는 대법원에서 특정업무경비 자체를 모르고 사용 금지된 경조사비에 사용하였다고 제기했으나 점검결과 매년 내부 집행지침을 시달하거나 지도·점검을 하였고, 2013년 1/4분기 집행내역에서는 경조사비로 집행된 구체적인 지출증빙을 발견하지 못했음
- ④ **국회**: 2012년까지 지출증빙 구비, 지출내역 작성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다가 2013년 영수증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으나 구체적이지 않게 작성된 지출내역 등으로는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상임위원회 활동비(매월 500~600만 원)를 포함, 정당 집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
 - 그러나 국회의원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와 같이 개별법령에 지급근거가 있는 특정업무경비의 경우에는 월정액 지급대상 및 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개선 필요

3) III. 감사결과 ② 문제점(p. 25)에서 별도 상세 서술

가. 특임장관실의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

특임장관실⁴⁾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표 4]와 같이 2009년 50,450천 원에서 2012년 342,400천 원으로 291,950천 원이, 같은 기간 집행액은 45,908천 원에서 313,332천 원으로 267,424천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2013년 예산 313,480천 원 중 32,231천 원을 1/4분기에 집행하였다.

[표 4] 특임장관실의 특정업무경비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

(금액단위: 천 원)

구분	계	2009년(A)	2010년	2011년	2012년(B)	2013년 3월 말	증가액(B-A)
예산액	1,391,130	50,450	342,400	342,400	342,400	313,480	291,950
- 기본(공통)경비	23,130	450	5,400	5,400	5,400	6,480	4,950
- 특임활동경비	1,368,000	50,000	337,000	337,000	337,000	307,000	287,000
집행액	901,175	45,908	197,285	312,419	313,332	32,231	267,424
불용액	208,706	4,542	145,115	29,981	29,068	-	24,526

주: 2013년 불용액 발생시기가 미도래하여 불용액 계는 예산액에서 집행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과 불일치함

자료: 특임장관실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위 관서에서는 특정업무경비를 예산편성활동비, 결산활동비, 특임활동경비 등의 용도에 집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번 감사에서 2013년 1/4분기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특정업무별⁵⁾로 월정액을 1인당 월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실비 집행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지출증빙으로 첨부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감사청구를 통해 정무직과 기능직을 제외한 모든 직원에게 월정액과 실지급액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고 제기했으나 감사원 감사결과 정무직과 기능직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특임활동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특정업무경비 집행상의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4) 특임장관실은 2013. 3. 23.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며 소관 업무는 국무총리비서실로 이관

5) 소수 인력으로 특임장관실을 운영하다 보니 실무인력이 여러 가지 업무(예산 및 특임업무)를 동시 수행

나. 국세청의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

국세청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표 5]와 같이 2008년 44,012,802천 원에서 2012년 50,160,036천 원으로 6,147,234천 원이, 같은 기간 집행액은 42,790,157천 원에서 49,916,697천 원으로 7,126,540천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2013년 예산 47,916,656천 원 중 10,808,470천 원이 1/4분기에 집행되었다.

[표 5] 국세청의 특정업무경비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

(금액단위: 천 원)

구분	계	2008년(A)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B)	2013년 3월 말	증가액(A-B)
예산액	290,381,408	44,012,802	46,190,010	46,187,202	49,767,468	50,160,036	47,916,656	6,147,234
- 기본(공통)경비	1,092,896	217,560	217,560	214,752	165,056	164,936	165,656	-52,624
- 사업비	289,288,512	43,795,242	45,972,450	45,972,450	49,602,412	49,995,100	47,751,000	6,199,858
집행액	250,389,671	42,790,157	45,621,782	45,814,592	48,311,433	49,916,697	10,808,470	7,126,540
불용액	2,883,551	1,222,645	568,228	372,610	1,456,035	243,339	-	-979,306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위 관서에서는 특정업무경비를 예산활동비, 감사활동비, 결산활동비, 과세자료수집비, 직원정보자료수집비, 관서정보자료수집비, 역외정보수집활동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이번 감사에서 2013년 1/4분기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월정액을 1인당 매월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실비 집행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지출증빙으로 첨부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감사청구를 통해 특정업무경비로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제기했으나 감사원 감사결과 2011년 역외정보수집활동비 예산(36억 원)으로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사업비 133,829천 원)한 것은 특정업무경비 집행지침에 맞지 않다는 국회의 지적⁶⁾(주의)를 받은 이후에는 같은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6) 「국회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다. 법무부의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

법무부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표 6]과 같이 2008년 2,966,220천 원에서 2012년 3,981,060천 원으로 1,014,840천 원이, 같은 기간 집행액은 2,963,046천 원에서 3,969,800천 원으로 1,006,754천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2013년 예산 4,786,442천 원 중 1,081,987천 원을 1/4분기에 집행하였다.

[표 6] 법무부의 특정업무경비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

(금액단위: 천 원)

구분	계	2008년(A)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B)	2013년 3월 말	증가액(A-B)
예산액	21,136,414	2,966,220	3,058,243	3,222,989	3,121,460	3,981,060	4,786,442	1,014,840
- 기본(공통)경비	4,381,802	680,280	684,503	738,599	732,560	765,160	780,700	84,880
- 사업활동경비	16,754,612	2,285,940	2,373,740	2,484,390	2,388,900	3,215,900	4,005,742	929,960
집행액	17,266,361	2,963,046	2,997,183	3,142,930	3,109,116	3,969,800	1,081,987	1,006,754
불용액	167,897	3,174	61,060	80,059	12,344	11,260	-	8,086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위 관서에서는 특정업무경비를 예산편성활동비, 감사활동비, 검찰활동비, 교도소 사법경찰 활동비, 공익법무관 활동비, 보호관찰활동비, 출입국심사관 활동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이번 감사에서 2013년 1/4분기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월정액을 1인당 매월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실비 집행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지출증빙으로 첨부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감사청구를 통해 매년 특정업무경비 중 공익법무관 활동비를 과다하게 편성하여 예산을 불용하였다고 제기했으나 감사원 감사결과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57,234천 원, 62,100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국방부의 공익법무관 선발인원 확정이 예산 편성시점보다 늦어진 데 따른 것으로 2011년 이후 이와 같은 문제를 시정하여 불용액이 크게 감소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라.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

검찰청(대검찰청, 5개 고등검찰청, 18개 지방검찰청, 40개 지방검찰청 지청 포함, 이하 같음)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표 7]과 같이 2008년 19,686,163천 원에서 2012년 33,136,524원으로 13,450,361천 원이, 같은 기간 집행액은 19,686,067천 원에서 33,135,753천 원으로 13,449,686천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2013년 예산 35,352,524천 원 중 8,229,196천 원을 1/4분기에 집행하였다.

[표 7]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

(금액단위: 천 원)

구분	계	2008년(A)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B)	2013년 3월 말	증가액(A-B)
예산액	169,183,527	19,686,163	22,891,268	27,170,524	30,946,524	33,136,524	35,352,524	13,450,361
집행액	155,497,308	19,686,067	22,887,572	27,170,508	30,938,526	33,135,753	8,229,196	13,449,686
불용액	12,076	96	3,696	16	8,268	771	-	675

자료: 검찰청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위 관서에서는 특정업무경비를 범죄수사지도비, 검찰수사활동지원경비,公安수사활동비,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활동비, 마약수사활동비, 공소유지활동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이번 감사에서 2013년 1/4분기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월정액을 1인당 매월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실비 집행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지출증빙으로 첨부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감사청구를 통해 검찰청의 지검 부별로 월 200만 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였다고 제기했으나 감사원 감사결과 이는 검찰청의 지검에서 법무부로부터 월 200만 원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배정받아 실비 집행 시 지출증빙 등을 첨부하고 있어 집행상의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마. 안전행정부의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

안전행정부(구 행정안전부)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표 8]과 같이 2008년 802,229천 원에서 2012년 896,200천 원으로 93,971천 원이, 같은 기간 집행액은 763,105천 원에서 821,024천 원으로 57,919천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2013년 예산 847,500천 원 중 187,789천 원을 1/4분기에 집행하였다.

[표 8] 안전행정부의 특정업무경비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

(금액단위: 천 원)

구분	계	2008년(A)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B)	2013년 3월 말	증가액(A-B)
예산액	5,052,527	802,229	838,297	813,101	855,200	896,200	847,500	93,971
- 기본(공통)경비	607,937	93,056	95,181	104,040	104,280	104,280	107,100	11,224
- 사업활동경비	4,444,590	709,173	743,116	709,061	750,920	791,920	740,400	82,747
집행액	4,121,022	763,105	796,062	782,392	770,650	821,024	187,789	57,919
불용액	281,794	39,124	42,235	30,709	84,550	75,176	-	36,052

자료: 안전행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위 관서에서는 특정업무경비를 복무활동비, 재산심사활동비, 인사감사활동비, 인사심사활동비, 보수감사활동비, 단체교섭활동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이번 감사에서 2013년 1/4분기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월정액을 1인당 매월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였고 별도의 실비 집행예산이 없어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감사청구를 통해 2010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단장, 위원장에게 월 80만 원씩 지급했다고 제기했으나 감사원 감사결과 2010년까지 단장에게는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여 특정업무경비 집행지침을 위반하지 않았고, 위원장에게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여 위 지침을 위반했으나 국회의 지적(주의)을 받고 이를 개선한 후에는 집행상의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바. 소방방재청의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

소방방재청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표 9]와 같이 2008년 514,220천 원에서 2012년 579,354천 원으로 65,134천 원이, 같은 기간 집행액은 505,471천 원에서 561,450천 원으로 55,979천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2013년 예산 590,650천 원 중 141,310천 원을 1/4분기에 집행하였다.

[표 9] 소방방재청의 특정업무경비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

(금액단위: 천 원)

구분	계	2008년(A)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B)	2013년 3월 말	증가액(A-B)
예산액	3,311,784	514,220	520,040	547,280	560,240	579,354	590,650	65,134
집행액	2,809,142	505,471	516,950	540,287	543,674	561,450	141,310	55,979
불용액	53,302	8,749	3,090	6,993	16,566	17,904	-	9,155

자료: 소방방재청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위 관서에서는 특정업무경비를 예산편성활동비, 경리활동비, 감사활동비, 방호활동비, 구조활동비, 교관활동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이번 감사에서 2013년 1/4분기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월정액을 1인당 매월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였고 별도의 실비 집행예산이 없어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감사청구를 통해 특정업무경비를 특정 부서, 직렬, 직급의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제기했으나 감사원 감사결과 특정업무경비를 예산편성 활동 등의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였고, 특히 방호활동비와 구조활동비는 소방공무원의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 여건에 대한 처우 개선책의 일환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방호 및 구조활동을 수행하는 소방직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집행상의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사. 농림축산식품부의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

농림축산식품부(구 농림수산식품부)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표 10]과 같이 2008년 1,033,402천 원에서 2012년 1,486,980천 원으로 453,578천원이, 같은 기간 집행액은 1,010,269천 원에서 1,473,297천 원으로 463,028천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2013년 예산 1,533,940천 원 중 181,935천 원을 1/4분기에 집행하였다.

[표 10] 농림축산식품부의 특정업무경비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

(금액단위: 천 원)

구분	계	2008년(A)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B)	2013년 3월 말	증가액(A-B)
예산액	9,109,582	1,033,402	1,648,706	1,713,174	1,693,380	1,486,980	1,533,940	453,578
- 기본(공통)경비	203,632	33,220	34,652	34,740	34,740	34,740	31,540	1,520
- 사업활동경비	8,905,950	1,000,182	1,614,054	1,678,434	1,658,640	1,452,240	1,502,400	452,058
집행액	7,620,115	1,010,269	1,611,610	1,670,046	1,672,958	1,473,297	181,935	463,028
불용액	137,462	23,133	37,096	43,128	20,422	13,683	-	-9,4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위 관서에서는 특정업무경비를 예산편성활동비, 감사활동비, 특별사법경찰 업무활동비, 교원연구보조비, 교원정액연구비, 가축방역·축산물안전관리·식품검역 특별사법경찰업무활동비 등으로 집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번 감사에서 2013년 1/4분기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월정액은 1인당 매월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실비 집행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지출증빙으로 첨부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감사청구를 통해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원에게 월 45~55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였다고 제기했으나 감사원 감사결과 2011년까지 성과급 및 교원정액연구비를 특정업무경비에서 집행하였다는 국회의 지적(시정)을 받고 이를 개선(2012년부터 기타직 보수예산에서 성과급 등 지급)한 후에는 집행상의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아.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표 11]과 같이 2008년 2,476,000천 원에서 2012년 3,605,000천 원으로 1,129,000천 원이, 같은 기간 집행액은 2,471,193천 원에서 3,570,821천 원으로 1,099,628천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2013년 예산 3,926,000천 원 중 958,690천 원을 1/4분기에 집행하였다.

[표 11]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

(금액단위: 천 원)

구분	계	2008년(A)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B)	2013년 3월 말	증가액(A-B)
예산액	19,162,375	2,476,000	2,610,125	3,049,125	3,496,125	3,605,000	3,926,000	1,129,000
- 기본(공통)경비	307,000	51,000	51,000	51,000	51,000	51,000	52,000	-
- 감사활동경비	18,855,375	2,425,000	2,559,125	2,998,125	3,445,125	3,554,000	3,874,000	1,129,000
집행액	16,115,334	2,471,193	2,609,356	3,026,003	3,479,271	3,570,821	958,690	1,099,628
불용액	-	4,807	769	23,122	16,854	34,179	-	29,372

자료: 감사원사무처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위 관서에서는 특정업무경비를 감사위원 심의활동비, 감찰활동비, 예산편성활동비, 실지감사 현장감사반 지휘비, 간부지휘비, 모니터링활동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이번 감사에서 2013년 1/4분기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월정액을 1인당 매월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실비 집행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지출증빙 서류로 첨부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감사청구를 통해 정무직 감사위원 6명에게 매월 50만 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제기했으나 감사원 감사결과 2011년까지 6개 감사위원실에 매월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소요가 발생할 때마다 현금으로 지급하다가 2012년부터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고 그 집행내역을 작성·관리하도록 개선하여 특정업무경비 집행상의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자. 경찰청의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

경찰청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표 12]와 같이 2008년 405,044,383천 원에서 2012년 440,042,562천 원으로 34,998,179천 원이, 같은 기간 집행액은 401,514,303천 원에서 436,995,923천 원으로 35,481,620천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2013년 예산 443,381,422천 원의 31%인 137,209,548천 원을 1/4분기에 집행하였다.

[표 12] 경찰청의 특정업무경비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

(금액단위: 천 원)

구분	계	2008년(A)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B)	2013년 3월 말	증가액(A-B)
예산액	2,600,125,616	405,044,383	415,966,000	424,704,070	435,989,000	440,042,562	443,381,422	34,998,179
- 기본(공통)경비	979,600	169,920	169,920	171,600	177,000	153,360	154,360	-16,560
- 사업활동경비 (치안활동비)	2,599,146,016 (1,226,856,330)	404,874,463 (196,367,340)	415,796,080 (199,803,720)	424,532,470 (203,538,960)	435,812,000 (205,782,660)	439,889,202 (205,777,815)	443,227,062 (206,175,360)	35,014,739 (9,410,475)
집행액	2,271,424,717	401,514,303	412,483,475	419,143,043	428,596,805	436,995,923	137,209,548	35,481,620
불응액	22,529,025	3,530,080	3,482,525	5,561,027	7,392,195	3,046,639	-	-483,441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위 관서에서는 특정업무경비를 재정요원활동비, 감찰활동비, 범죄수사지도활동비, 수사정보수집비, 뺑소니수사요원활동비, 부서별 범죄수사경비, 치안활동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이번 감사에서 2013년 1/4분기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실비 집행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지출증빙으로 첨부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재정요원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급한 것과 별도로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치안활동비(1990년부터 지급)를 매월 17만 원 지급하여 개인별 월정액 한도(30만 원)를 1만 원에서 17만 원 초과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에서는 감사청구를 통해 치안활동비의 수당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차. 헌법재판소의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

헌법재판소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표 13]과 같이 2008년 833,644천 원에서 2012년 1,064,786천 원으로 231,142천 원이, 같은 기간 집행액은 833,501천 원에서 1,064,071천 원으로 230,570천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2013년 예산 1,082,000천 원 중 220,868천 원을 1/4분기에 집행하였다.

[표 13] 헌법재판소의 특정업무경비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

(금액단위: 천 원)

구분	계	2008년(A)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B)	2013년 3월 말	증가액(A-B)
예산액	5,894,826	833,644	833,644	1,040,376	1,040,376	1,064,786	1,082,000	231,142
- 기본(공통)경비	3,246,826	525,644	525,644	532,376	532,376	556,786	574,000	31,142
- 사업활동경비	2,648,000	308,000	308,000	508,000	508,000	508,000	508,000	200,000
집행액	5,047,836	833,501	833,644	1,040,376	1,040,376	1,064,071	220,868	230,570
불용액	858	143	-	-	-	715	-	572

자료: 헌법재판소사무처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위 관서에서는 특정업무경비를 헌법재판활동비, 재판부운영비, 판례심사활동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이번 감사에서 2013년 1/4분기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월정액은 1인당 30만 원을 넘지 않아 문제가 없었고, 실비 집행에 있어서도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지출증빙을 첨부하는 등으로 집행한 비율이 2012년 33.0%(279/845백만 원)⁷⁾에서 2013년 1/4분기 40.6%(67/165백만 원)로 7.6%p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실비 지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게 작성된 지출내역이나 수령증으로 관리하여 정당 집행 여부를 알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7) 특정업무경비는 헌법재판활동비 등 총 8개 비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사용금액이 큰 4개 항목(헌법재판활동비, 재판부운영비, 판례심사활동비, 재판운영지원비)에 대해서만 점검대상으로 하였고 이를 기초로 정당 집행 비율을 산출함에 따라 [표 13]의 2012년과 2013년 집행액과 차이가 발생

한편, 참여연대는 감사청구를 통해 특정분야 업무와 무관한 헌법재판연구원에게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였다고 제기했으나 감사원 감사결과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 및 헌법재판 등과 관련하여 법조인, 관련 전문가, 국내외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각종 정보수집, 자료조사,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 판례를 분석하는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어 집행상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카. 대법원의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

대법원(대법원, 5개 고등법원, 23개 지방법원 등 포함)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표 14]와 같이 2008년 16,349,600천 원에서 2012년 17,577,040천 원으로 1,227,440천 원이, 같은 기간 집행액은 16,227,449천 원에서 17,504,130천 원으로 1,276,681천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2013년 예산 17,684,040천 원 중 4,140,240천 원을 1/4분기에 집행하였다.

[표 14] 대법원의 특정업무경비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

(금액단위: 천 원)

구분	계	2008년(A)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B)	2013년 3월 말	증가액(A-B)
예산액	102,294,260	16,349,600	16,540,600	16,971,940	17,171,040	17,577,040	17,684,040	1,227,440
- 기본(공통)경비	31,434,240	5,101,040	5,101,040	5,209,040	5,227,040	5,360,040	5,436,040	259,000
- 사업활동경비	70,860,020	11,248,560	11,439,560	11,762,900	11,944,000	12,217,000	12,248,000	968,440
집행액	88,378,059	16,227,449	16,462,057	16,937,688	17,127,575	17,504,130	4,140,240	1,276,681
불용액	351,321	122,151	78,543	34,252	43,465	72,910	-	-49,241

자료: 법원행정처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위 관서에서는 특정업무경비를 감사활동비, 예산업무활동지원비, 재판활동비, 사법행정활동비, 관례자료수집비, 관례심사활동비, 재판부활동비, 사법운영활동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이번 감사에서 2013년 1/4분기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 관서에서는 같은 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자체 집행계획’을 개선하여 2008년 이전부터 2013년 3월까지 1인당 매월 최대 170만 원까지 지급해 오던 월정액에 대해 각종 명목의 월정액을 합산하여도 3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였으나 일부 법원에서 행정착오 등으로 인해 월정액 한도보다 12만 원에서 15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교육과건자에게 월정액으로 매월 22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실비 집행에 있어서도 2008년부터 2013년 4월까지 각 재판부에 매월 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지급하던 재판부 활동비를 2013년 5월부터 실제 소요 발생 시 수시 배정하는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지출증빙을 첨부하는 등으로 집행한 비율이 2012년 8.7%(1,042/12,032백만 원)⁸⁾에서 2013년 1/4분기 20.6%(560/2,722백만 원)로 11.9%p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실비 지출은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게 작성된 지출내역이나 수령증으로 관리하여 정당 집행 여부를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편, 참여연대는 감사청구를 통해 대법원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사용이 금지된 경·조사비에 사용하였다고 제기했으나 감사원 감사결과 대법원에서 매년 특정업무경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내부 집행지침을 시달하거나 지도·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2013년 1/4분기 집행내역에서 경조사비로 집행된 구체적인 지출증빙을 발견하지 못했고, 구체적이지 않게 작성된 지출내역 등에서는 경조사비 지출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8) 특정업무경비 세부 비목 중 감사원 점검대상으로 한 일부 비목을 기초로 비율을 산출함에 따라 [표 14]의 집행액과 차이를 보임

타.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

국회(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정책처, 국회도서관)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표 15]와 같이 2008년 10,465,360천 원에서 2012년 18,222,060천 원으로 7,756,700천 원이, 같은 기간 집행액은 10,229,166천 원에서 17,430,243천 원으로 7,201,077천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2013년 예산 17,991,252천 원 중 3,585,748천 원을 1/4분기에 집행하였다.

[표 15]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

(금액단위: 천 원)

구분	계	2008년(A)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B)	2013년 3월 말	증가액(A-B)
예산액	81,521,425	10,465,360	11,195,920	11,223,920	12,422,913	18,222,060	17,991,252	7,756,700
집행액	64,436,942	10,229,166	10,502,532	10,960,605	11,728,648	17,430,243	3,585,748	7,201,077
불용액	2,678,979	236,194	693,388	263,315	694,265	791,817	-	555,623

자료: 국회 제출자료 및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자료 등 재구성

그리고 위 관서에서는 특정업무경비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위원회간사 활동비, 소위원회활동비, 상임위원회 등 위원회활동비, 입법조사지원활동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이번 감사에서 2013년 1/4분기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012년까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는 사유로 의정활동지원경비 등의 지출증빙을 엄격하게 요구·구비하지 않는 등 지출내역 기록 및 관리가 미흡하였고, 「특정업무경비 집행요건 강화지침」⁹⁾(2013. 2. 1., 기획재정부)에 따라 특정업무경비는 영수증 첨부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지급일자, 금액, 사유 등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위 관서에서는 샘플자료만 감사자료로 제출하거나 열람하도록 하고 전체자료 및 현황을 제출하지 않아 영

9) 기획재정부는 2013년 1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노출된 특정업무경비와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3. 2. 1. 「특정업무경비 집행요건 강화지침」을 마련하여 각 기관에 통보

수증 등 지출증빙의 규모, 지출내역 기록·관리 및 정당 지출여부 등을 제대로 점검·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있는 의정활동지원 성격의 특정업무경비(2013년 국회의원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예산 14,112,000천 원)는 특정업무경비 집행지침에서 월정액 지급대상 및 한도의 예외를 인정해 주거나 예산편성 항목을 변경하는 등 집행상 모순을 개선하고, 기관운영지원 성격의 특정업무경비(2013년 예산 3,879,252천 원)는 지출증빙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참여연대는 감사청구를 통해 국회사무처에서 상임위원회활동비¹⁰⁾로 매월 500~6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제기했으나 감사원 점검결과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지출증빙이 구체적인 용도를 확인할 수 없게 구체적이지 않게 작성된 지출내역이나 수령증 등으로 관리되고 있어 정당 집행 여부를 알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10) 상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조사비, 예비검토투비, 안건검토투비 등의 용도로 사용

2

문 제 점

□ 헌법재판소 등 3개 기관에서 특정업무경비 집행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여 지출증빙 첨부비율 증가 등 일부 성과가 있기는 했으나 지출내역 등의 관리가 부실하여 경비 집행의 정당성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

① **헌법재판소**: 2012년 실비 집행액 845,389천 원 중 566,203천 원(67.0%), 2013년 1/4분기 실비 집행액 165,495천 원 중 98,572천 원(59.6%)에 대하여 경비집행의 정당성 등을 알 수 없는 지출내역 등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그 비율은 67.0%에서 59.6%로 감소

② **대법원**: 2012년 집행액 12,031,650천 원 중 10,989,699천 원(91.3%), 2013년 1/4분기 실비 집행액 2,772,300천 원 중 2,212,386천 원(79.8%)에 대하여 경비집행의 정당성 등을 알 수 없는 현금수령증 등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그 비율은 91.3%에서 79.8%로 감소

- 한편 교육파견을 받고 특정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사법등기심의관 16명에게 매월 22만 원에서 50만 원 계 69,880천 원을 부당 지급하고, 법원장에게 매월 30만 원의 '사법행정활동비'와 함께 2013년 4월 폐지한 '판례자료조사수집비'를 지급, 월정액 한도(30만 원)를 12만 원에서 15만 원 초과

③ **국회**: 국회사무처에서 2012년 집행액 계 2,706,785천 원에 대하여 지출내역 기록을 미흡하게 하다가 2013년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개선했으나 2013년 1/4분기 집행액 계 567,781천 원 대부분에 대하여 집행의 정당성 등 여부를 알 수 없는 지출내역 등으로 관리

□ 월정액으로 지급하도록 개별법령에 지급단가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연혁 등이 특수하여 집행지침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일괄 적용하여 모순 발생

① **경찰청**: 1989년 동의대 사태를 계기로 수당으로 지급해오던 치안활동비를 2004년부터 특정업무경비로 편성하고도 '사실상 수당'이라며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면서 과세하고 있어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이 아닌 특정업무경비 취지를 위배, 다른 월정액과 합산할 경우 1인당 31~47만 원으로 월정액 한도(30만 원)를 초과

② **국회**: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지급단가가 명시되어 있는 국회의원 입법활동비(월 3,136,000원)와 특별활동비(회기 1일당 31,360원)를 특정업무경비로 편성하여 집행하면서 집행상 예외를 두지 않아 지급대상(정무직) 및 월정액 한도(30만 원) 등에서 집행지침과 상충되는 결과 초래

□ 기획재정부는 2013년 2월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시정하기 위해 「특정업무경비 집행요건 강화지침」을 마련했으나 특정업무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에는 역부족

○ 증빙첨부가 곤란한 사유 등을 명시하고 감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불투명한 집행 관행 지속 시 관련 예산의 축소 등 실효성 있는 내실화방안 마련 시급

1) 특정업무경비 집행 부적정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에서 수사, 감사, 예산 등 특정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편성하고 특정업무경비 집행지침에 따라 직원에게 월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소요 경비를 실비 지원하고 있다.

(1) 특정업무경비 지출증빙 미첨부 또는 지출내역 부실 작성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외의 경비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야 하고 증빙하기 어려운 지출의 경우 지출내역을 기록하며 감독자가 확인·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2013. 2. 1. 통보한 「특정업무경비 집행요건 강화지침」에 따르면 정부구매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첨부가 곤란한 경우 지급내역에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업무경비를 실비 집행할 때는 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을 갖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특정업무와 관련하여 집행되었음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기록·관리하여 특정업무경비가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에서 헌법재판소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정업무경비 실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카드매출전표 등 지출증빙 없이 현금수령증 또는 구체적이지 않게 작성한 집행내역만을 첨부한 채 실비를 집행하여 특정업무경비가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가) 헌법재판소의 경우

위 관서에서는 2012년 재판부운영비(87,930천 원)에 대해 지출내역만 기록하고

지출증빙은 첨부하지 않은 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이체로 집행하였는데 위 지출내역의 지급사유를 보면 ‘재판부운영비’ 등으로 구체적이지 않게 기록되어 있어 재판부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하였음을 명확히 알 수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별표 1] “헌법재판소의 2012년도 특정업무경비 실비 집행 현황”과 같이 4개 항목의 집행액 계 845,389천 원 중 279,186천 원(33.0%)만 지출증빙을 갖추고 나머지 566,203천 원(67.0%)은 지급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게 기록되어 있어 지출내역만으로는 경비집행의 정당성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특정업무경비 집행요건 강화지침」이 통보·시행된 2013년 1/4분기에도 [별표 2] “헌법재판소의 2013년도 1/4분기 특정업무경비 실비 집행 현황”과 같이 4개 항목의 집행액 계 165,495천 원 중 66,923천 원(40.4%)만 증빙을 갖추고 나머지 98,572천 원(59.6%)은 2012년과 마찬가지로 지출내역에 지급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게 기록되어 있어 경비집행의 정당성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위 관서의 지출증빙 첨부비율이 2012년 33.0%에서 2013년 1/4분기 40.4%로 7.4%p 증가하는 등 특정업무경비 실비 집행의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고 있었다.

(나) 대법원의 경우

위 관서에서는 2012년 재판활동비(6,432,237천 원)에 대해 현금수령증이나 지출내역만 기록하고 지출증빙은 첨부하지 않은 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이체로 집행하였는데 위 지출내역의 지급사유를 보면 ‘재판부활동비’, ‘사법행정활동비’ 등으로 구체적이지 않게 기록되어 있어 현금수령증 또는 지출내역만으로는 재판활동에 집행하였음을 명확히 알 수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별표 3] “대법원의 2012년도 특정업무경비 실비 집행 현황”과 같이 6개 항목의 집행액 계 12,031,650천 원 중 1,041,952천 원(8.7%)만 증빙을 갖추었고 1,956,573천 원(16.2%)은 지급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게 기록된 지출내역, 나머지 9,033,126천 원(75.1%)은 지출내역도 없이 현금수령증만 있어 경비 집행의 정당성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특정업무경비 집행요건 강화지침」이 통보·시행된 2013년 1/4분기에도 [별표 4] “대법원의 2013년도 1/4분기 특정업무경비 실비 집행 현황”과 같이 6개 항목의 집행액 계 2,772,300천 원 중 559,914천 원(20.2%)만 증빙을 갖추었고 391,365천 원(14.1%)은 이와 같이 지급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게 기록된 지출내역, 나머지 1,821,021천 원(65.7%)은 지출내역도 없이 현금수령증만 있어 경비집행의 정당성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위 관서에서 2013. 3. 19. 각급 법원, 같은 해 4. 19. 대법원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특정업무경비 예산 집행계획’을 변경하면서 2008년부터 2013년 4월까지 상고심 재판부에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각 재판부에 매월 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지급하던 재판부활동비에 대해 2013년 5월부터는 실제 소요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배정하는 등으로 개선하여 지출증빙을 첨부하는 등의 집행비율이 2012년 8.7%에서 2013년 1/4분기 20.2%로 11.5%p 증가하는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있었다.

(다) 국회의 경우

① 국회사무처의 경우

위 관서에서는 2012년 위원회 간사활동비(183,598천 원)에 대해 지출증빙이나

지출내역은 첨부하지 않은 채 현금수령증만 받고 집행하는 등 [별표 5] “국회사무처의 2012년도 특정업무경비 실비 집행 현황”과 같이 5개 항목의 집행액 계 2,706,785천 원에 대해 현금수령증이나 지급사유 등이 구체적이지 않게 기록된 지출내역 확인서만 관리하고 있어 이로서는 경비집행의 정당성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위 관서에서는 2012년까지 기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출증빙을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고 지출내역을 제대로 기록하지 아니하다가 「특정업무경비 집행요건 강화지침」이 통보된 이후에는 영수증 첨부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지급일자, 금액, 사유 등을 지출내역에 구체적으로 기록·관리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관의 특수한 상황을 사유로 관련 자료의 샘플만 감사 자료로 제출하거나 열람하도록 하고 전체 자료 및 현황을 제출하지 않아 [별표 6] “국회사무처의 2013년도 1/4분기 특정업무경비 실비 집행 현황”과 같이 5개 항목의 집행액 계 567,781천 원에 대하여 영수증 등 지출증빙 규모, 지출내역 기록·관리 및 경비집행의 정당성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②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우

위 관서에서는 2012년 기관운영 관련 활동비 56,000천 원에 대해 지출증빙은 첨부하지 않은 채 지출내역서만 제출받고, 현금으로 집행하였는데 지출내역서를 보면 ‘기관운영 관련 활동비’로 구체적이지 않게 기록되어 있어 경비집행의 정당성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위 관서에서도 국회사무처와 같이 「특정업무경비 집행요건 강화지침」이 통보된 이후 실비 집행 방법을 개선하고 있으나 2013년 1/4분기에 집행한 ‘기관운영 관련 활동비’ 14,000천 원에 대해서도 지출증빙은 첨부하지

않은 채 구체적이지 않게 기록된 지출내역서만 제출받고, 현금으로 집행하여 경비집행의 정당성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③ 국회입법조사처의 경우

위 관서에서는 2012년 기관운영 업무수행경비(10,000천 원)에 대해 지출증빙은 첨부하지 않은 채 지출내역서만 제출받고 현금으로 집행하였는데 지출내역서를 보면 ‘기관운영 관련 경비’ 등으로 구체적이지 않게 기록되어 있는 등 [별표 7] “국회입법조사처의 2012년도 특정업무경비 실비 집행 현황”과 같이 2개 항목의 집행액 계 46,000천 원에 대해 구체적이지 않게 기록된 지출내역만 관리하고 있어 경비집행의 정당성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위 관서에서도 국회사무처와 같이 「특정업무경비 집행요건 강화지침」이 통보된 이후 실비 집행 방법을 개선하고 있으나 [별표 8] “국회입법조사처의 2013년도 1/4분기 특정업무경비 실비 집행 현황”과 같이 2개 항목의 집행액 계 14,000천 원에 대해서도 지출증빙은 첨부하지 않은 채 구체적이지 않게 기록된 지출내역서만 제출받고, 현금으로 집행하여 경비집행의 정당성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④ 국회도서관의 경우

위 관서에서는 2012년 입법조사 지원활동비(36,000천 원)에 대해 지출증빙은 첨부하지 않은 채 지출내역서만 제출받고, 현금으로 집행하였는데 지출내역서를 보면 ‘입법조사 지원활동비’로 구체적이지 않게 기록되어 있는 등 [별표 9] “국회도서관의 2012년도 특정업무경비 실비 집행 현황”과 같이 2개 항목의 집행액 계 48,000천 원에 대해 구체적이지 않게 기록된 지출내역만으로 관리하고 있어 경비집행의 정당성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위 관서에서도 국회사무처와 같이 「특정업무경비 집행요건 강화지침」이 통보된 이후 실비 집행 방법을 개선하고 있으나 [별표 10] “국회도서관의 2013년도 1/4분기 특정업무경비 실비 집행 현황”과 같이 2개 항목의 집행액 계 11,000천 원에 대해서도 지출증빙은 첨부하지 않은 채 구체적이지 않게 기록된 지출내역서만 제출받고, 현금으로 집행하여 경비집행의 정당성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2) 교육과전자에게 특정업무경비 부당 지급

특정업무경비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특정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법원행정처에서 2008. 1. 28.부터 2008. 12. 5.까지 국방대학교에 교육과전한 사법등기심의관에게 매월 50만 원의 특정업무경비 계 5,080,640원(1개월 미만 일할계산)을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등 2008. 1. 28.부터 2013. 12. 11. 사이에 교육과전하여 특정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법등기심의관 16명에게 위 집행지침과 달리 매월 22만 원에서 50만 원 계 69,880천 원의 특정업무경비를 부당 지급하였다.

(3) 특정업무경비 월정액 한도초과 지급

특정업무경비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30만 원 범위 내에서 매월 개인별로 정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에서는 2008년 이전부터 2013년 3월까지 각급 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 사무국장 등에게 1인당 매월 최대 170만 원까지 지급해 오던 월정액에 대해 2013. 3. 19. 각급 법원, 같은 해 4. 19. 대법원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특정업무경비 예산 집행계획’을 변경하여 각종 명목의 월정액을 합산하여

도 3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위 관서에서는 법원장에게 매월 30만 원의 사법행정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대신 매월 12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하던 판례자료조사 수집비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런데도 대구고등법원 및 전주·부산·광주·청주·창원지방법원 등 5개 지방법원에서는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4개월 간 행정집행상의 착오 등을 이유로 사법행정활동비와 판례자료조사수집비를 함께 지급하고 있어 개인별 월정액 한도 30만 원을 12만 원에서 15만 원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지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국회사무총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도서관장은 앞으로 특정업무경비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취지와 다르게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불명확한 지출내역만 작성한 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특정업무경비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법원행정처장은 앞으로 특정업무경비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취지와 다르게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불명확한 지출내역만 작성한 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월정액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특정업무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거나 개인별 월정액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특정업무경비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 치안활동비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불합리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특정업무경비 집행지침을 작성·통보하는 등 각 기관에서 집행하는 특정업무경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을 총괄하고 있다.

위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매월 30만 원 범위 내에서 정액 지급 하되 정무직이나 특정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관의 치안활동비와 같이 연혁 등이 특수하거나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와 같이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개별법령에 지급단가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거나 성격에 맞게 예산편성 항목을 변경하는 등 합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치안활동비와 입법·특별활동비를 특정업무경비 예산에 편성하면서 특수성 등에 대한 고려없이 집행지침을 일괄 적용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위 경비의 실제 집행상 모순이 발생되고 있다.

(1) 경찰공무원 치안활동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불합리

경찰청에서 특정업무경비 예산 중 치안활동비로 2012년 2,578억 원, 2013년 2,062억 원을 편성·집행하였다.

치안활동비는 1989년 동의대 사태 이후 경찰관의 사기진작을 위해 [표 16]과 같이 1990년부터 특별방법수당, 치안활동수당 등으로 지급하다가 2004년에 정부에서 수당 등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운영수당’ 예산항목을 없애면서 특정업무경비 내 치안활동비로 전환된 경비이다.

[표 16] 치안활동비 예산편성 연혁

구분	1990년	1994년	2001년	2004년~2013년 6월 현재
명칭	특별방법수당	특별방법수당	치안활동수당	치안활동비
대상	경감 이하	경감 이하	경정 이하	경정 이하
월지급액	7만 원	7만 원	17만 원	17만 원
예산과목	수당(104목)	운영수당(210-06목)	운영수당(210-06목)	특정업무경비(250-03목)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수당 성격의 치안활동비를 특정업무경비로 예산편성할 경우 특정업무경비 월정액 한도 30만 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안전행정부와 협의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수당¹¹⁾(이하 “법정수당”이라 한다)으로 환원하거나 당초 취지대로 경찰관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집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별 월정액 한도(30만 원)에 예외를 적용하는 등 치안활동비를 집행지침 등에 어긋나지 않게 집행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안전행정부가 치안활동비 예산이 2013년 2,062억 원에 달하여 이를 법정수당으로 환원할 경우 보수 인상 및 연금재정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표시하자 법정수당으로 환원은 추진하지 않은 채 ‘사실상 수당’이라며 보수지급일에 보수와 함께 지급하며 특정업무경비 비목에 과세까지 하고 있어 「소득세법」 제3조 등을 위반하고 있다.

더욱이 위 관서에서는 경정 이하 경찰관 78,280명에게 특정업무경비 비목에 치안활동비로 매월 17만 원을 지급하면서 수사정보수집비 등을 추가시켜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어 [별표 11] “개인별 월정액 한도 초과 특정업무경비 지급 현황”과 같이 1인당 지급액이 매월 31만 원에서 47만 원에 달하는 등 집행지침에서 정한 월정액 한도(30만 원)를 위배하여 연간 총 863억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11) 「소득세법」 제3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치안활동비를 수당으로 볼 경우 과세를 해야 하지만 특정업무경비는 과세 대상이 아님

(2)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에 대한 집행지침 등 불합리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로 특정업무경비 예산에 2012년 140억 원, 2013년 141억 원이 편성·집행되고 있다.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표 17] 과 같이 2013년 6월 기준 입법기초자료 수집 및 연구 등을 위한 입법활동비는 매월 3,136,000원,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한 특별활동비는 회기 1일당¹²⁾ 31,36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표 17]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단가 변동표

구분	2008. 1. 1.~2010. 12. 31.	2011. 1. 1.~2011. 11. 30.	2011. 12. 1.~2013. 6. 30. 기준
입법활동비	월 1,800,000원	월 1,891,800원	월 3,136,000원
특별활동비	회기 1일당 18,000원	회기 1일당 18,918원	회기 1일당 31,360원

자료: 국회사무처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위 법령에 따라 입법·특별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특정업무경비로 편성하였다면 지급대상·지급액 등에서 위 법령과 집행지침 간에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에서는 입법·특별활동비를 특정업무경비 예산에 편성 하면서 정무직 지급금지 및 월정액 30만 원 등에 예외를 두지 아니하는 등 위 집행지침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나 위 집행지침상 정무직 지급금지 및 월정액 한도 규정 등에 배치되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다.

12) 입법활동단가의 30%×1/30×회기일수

<조치할 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찰관의 치안활동비와 같이 연혁 등에 특수성이 있거나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와 같이 개별법령에 지급단가 등이 명시되어 있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두거나 예산편성 항목을 변경하는 등 특정업무경비 집행상 모순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경찰청장은 특정업무경비로 지급하고 있는 치안활동비를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수당으로 전환하거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정액 한도에 예외를 두고 과세에서 제외하는 등 집행상 모순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3) 특정업무경비 집행 총괄·관리 미흡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각 중앙관서에게 특정업무경비 집행지침을 작성·통보하고 ‘중앙관서별 집행계획’을 수립·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는 등 특정업무경비 집행에 대하여 총괄·관리하고 있다.

위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야 하고, 소액이거나 영수증 첨부이 곤란하여 증빙하기 어려운 지출의 경우 지출내역을 기록·관리하고 감독자가 이를 확인·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앙관서의 장은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작성기준」 범위 내에서 ‘중앙관서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에 매년 1월 말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별표 12] “중앙관서별 집행계획 통보 현황”과 같이 2012년에는 이번 감사대상 12개 기관 중 헌법재판소 등 5개 기관, 2013년에는 경찰청 등 6개 기관에서만 ‘중앙관서별 집행계획’을 통보하였고 나머지 기관에서는 이를 통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보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개인별 또는 부서별 구체적인 실효성있는 집행계획 없이 집행지침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 형식적으로 제출하였는데도 이에 대해 지도·점검하거나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감독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 감사대상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2년 특정업무경비 실비집행의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헌법재판소사무처는 특정업무경비 실비 집행액 845,389천 원 중 566,203천 원(67.0%), 법원행정처는 집행액 12,031,650천 원 중 10,989,698천 원(91.3%), 국회 소속 4개 기관¹³⁾의 집행액 계 2,856,785천

원에 대하여 지출증빙을 갖추지 아니한 채 지급사유를 간담회 등으로 구체적이지 않게 기록한 지출내역 또는 현금수령증만 첨부하고 있었으나 이로서는 특정업무와 관련하여 집행되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위 관서에서는 2013년 1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그간의 잘못된 특정업무경비 집행관행이 문제가 되자, 같은 해 2. 1. 「특정업무경비 집행요건 강화지침」을 마련·통보하면서 증빙첨부가 곤란한 경우 지급내역에 지급일자, 금액,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으나 증빙첨부가 곤란한 사유 등을 명시하게 하고 부적절한 실비집행에 대하여 감독자의 책임을 강화하며 불투명한 집행관행 지속 시 관련 예산을 축소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실비집행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이번 감사에서 감사대상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3년 1/4분기 특정업무경비 실비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헌법재판소사무처는 특정업무 경비 실비 집행액 165,495천 원 중 98,572천 원(59.6%), 법원행정처는 집행액 2,772,300천 원 중 2,212,386천 원(79.8%), 국회 소속 4개 기관의 집행액 606,781천 원 대부분¹⁴⁾에 대하여 2012년과 마찬가지로 지급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게 기록된 지출내역 또는 현금수령증만을 첨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위 집행요건 강화지침에 따라 지출내역을 작성·관리하더라도 여전히 특정업무와 관련하여 집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실효성이 없어 특정업무경비 집행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13)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14) 2012년까지 지출증빙을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고 지출내역 기록 및 관리를 미흡하게 하다가 2013년부터 영수증 첨부을 원칙으로 불가피한 경우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으나 이번 감사 시 해당기관에서 관련 자료의 샘플만 제출하고 전체 자료 및 현황을 제출하지 않아 영수증 등 지출증빙, 지출내역 기록·관리 및 경비집행의 정당성 등 확인 불가

<조치할 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앞으로 각 기관으로부터 ‘중앙관서별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을 매년 제출받아 지도·감독하는 한편, 지출증빙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내역에 증빙서류 첨부이 곤란한 사유 등을 명시하고 부적절한 실비집행에 대하여 감독자의 책임을 강화하며 불투명한 집행관행이 지속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축소하는 등 특정업무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별표 목차 】

[별표 1] 헌법재판소의 2012년도 특정업무경비 실비 집행 현황	41
[별표 2] 헌법재판소의 2013년도 1/4분기 특정업무경비 실비 집행 현황	41
[별표 3] 대법원의 2012년도 특정업무경비 실비 집행 현황	42
[별표 4] 대법원의 2013년도 1/4분기 특정업무경비 실비 집행 현황	42
[별표 5] 국회사무처의 2012년도 특정업무경비 실비 집행 현황	43
[별표 6] 국회사무처의 2013년도 1/4분기 특정업무경비 실비 집행 현황	43
[별표 7] 국회입법조사처의 2012년도 특정업무경비 실비 집행 현황	44
[별표 8] 국회입법조사처의 2013년도 1/4분기 특정업무경비 실비 집행 현황	44
[별표 9] 국회도서관의 2012년도 특정업무경비 실비 집행 현황	45
[별표 10] 국회도서관의 2013년도 1/4분기 특정업무경비 실비집행 현황	45
[별표 11] 개인별 월정액 한도 초과 특정업무경비 지급 현황	46
[별표 12] 중앙관서별 집행계획 통보 현황	47

[별표 1]

헌법재판소의 2012년도 특정업무경비 실비 집행 현황

(단위: 천 원, %)

구분	계(비율)	재판부운영비	판례심사활동비	헌법재판활동비	헌법재판운영경비
예산액	884,920	97,200	108,000	279,720	400,000
집행액	845,389	87,930	98,439	249,767	409,253
- 카드영수증 등 증빙	279,186(33)	-	-	80,957	198,229
- 지출내역서만 구비	566,203(67)	87,930	98,439	168,810	211,024
지급개시연도	-	2005년	2002년	2005년	2008년
편성목적	-	전원재판부 및 지정재판부 운영비	재판부 판례심사활동 효율성 증대	재판부 헌법재판업무를 위한 대외활동비	재판부·사무처 등의 재판운영지원경비

자료: 헌법재판소사무처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헌법재판소의 2013년도 1/4분기 특정업무경비 실비 집행 현황

(단위: 천 원, %)

구분	계(비율)	재판부운영비	판례심사활동비	헌법재판활동비	헌법재판운영경비
예산액	844,920	97,200	108,000	239,720	400,000
집행액	165,495	20,055	21,249	43,924	80,267
- 카드영수증 등 증빙	66,923(40.4)	525	324	19,365	46,709
- 지출내역서만 구비	98,572(59.6)	19,530	20,925	24,559	33,558
지급개시연도	-	2005년	2002년	2005년	2008년
편성목적	-	전원재판부 및 지정재판부 운영비	재판부 판례심사활동 효율성 증대	재판부 헌법재판업무를 위한 대외활동비	재판부·사무처 등의 재판운영지원경비

자료: 헌법재판소사무처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3]

대법원의 2012년도 특정업무경비 실비 집행 현황

(단위: 천 원, %)

구분	계(비율)	감사활동비	예산결산 활동비	판례심사 활동비	재판부활동비	사법행정 활동비	사법운영 활동비
예산액	9,947,240	32,280	18,000	1,216,200	6,425,960	2,254,800	2,157,320
집행액	12,031,650	41,000	18,000	1,129,345	6,432,237	2,260,660	2,150,408
- 카드영수증 등 증빙	1,041,952(8.7)	-	-	-	-	332,317	709,635
- 지출내역서만 구비	1,956,573(16.2)	-	-	-	-	945,881	1,010,692
- 현금수령증만 구비	9,033,126(75.1)	41,000	18,000	1,129,345	6,432,237	982,462	430,082
지급개시연도	-	1994년 이전	2002년	2005년	1996년	2008년	2008년
편성목적	-	내부감사업무 담당	국회, 기획재정부 등 대외활동 업무	판례심사활동 지원	재판업무 지원	사법행정활동 지원	사법운영개선 지원

자료: 법원행정처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4]

대법원의 2013년도 1/4분기 특정업무경비 실비 집행 현황

(단위: 천 원, %)

구분	계(비율)	감사활동비	예산결산 활동비	판례심사 활동비	재판부활동비	사법행정 활동비	사법운영 활동비
예산액	12,211,560	53,080	25,600	1,216,200	6,425,960	2,302,400	2,188,320
집행액	2,772,300	13,270	6,300	304,050	1,626,850	581,330	240,500
- 카드영수증 등 증빙	559,914(20.2)	-	-	-	254,380	154,404	151,130
- 지출내역서만 구비	391,365(14.1)	-	-	-	-	383,465	7,900
- 현금수령증만 구비	1,821,021(65.7)	13,270	6,300	304,050	1,372,470	43,461	81,470
지급개시연도	-	1994년 이전	2002년	2005년	1996년	2008년	2008년
편성목적	-	내부감사 업무 담당	국회, 기획재정부 등 대외활동 업무	판례심사활동 지원	재판업무 지원	사법행정활동 지원	사법운영개선 지원

자료: 법원행정처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5]

국회사무처의 2012년도 특정업무경비 실비 집행 현황

(단위: 천 원, %)

구분	계(비율)	위원회간사 활동비	소위원회 활동비	상임위원회 등 위원회 활동비	의정활동 업무협의지원비	기관운영 업무수행 경비
예산액	3,170,196	300,000	696,000	269,840	789,630	1,114,726
집행액	2,706,785	183,598	443,066	265,760	780,371	1,033,990
- 카드영수증 등 증빙	-	-	-	-	-	-
- 지출내역서만 구비	2,706,785(100)	183,598	443,066	265,760	780,371	1,033,990
- 현금수령증만 구비	-	-	-	-	-	-
지급개시연도	-	2009년	2001년	2004년	2002년	2001년
편성목적	-	위원회 간사활동지원 경비	소위원회 운영경비	연구조사, 예비검토, 안건검토 경비	국회 운영협의 등 경비	기관 홍보, 행사 등 기관운영 경비

자료: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자료 및 국회사무처 제출 자료 재구성

[별표 6]

국회사무처의 2013년도 1/4분기 특정업무경비 실비 집행 현황

(단위: 천 원, %)

구분	계(비율)	위원회간사 활동비	소위원회 활동비	상임위원회 등 위원회 활동비	의정활동 업무협의지원비	기관운영 업무수행 경비
예산액	2,924,348	336,000	696,000	269,840	507,782	1,114,726
집행액	567,781	53,999	132,860	98,926	141,732	140,264
- 카드영수증 등 증빙	-	-	-	-	-	-
- 지출내역서만 구비	567,781(100)	53,999	132,860	98,926	141,732	140,264
- 현금수령증만 구비	-	-	-	-	-	-
지급개시연도	-	2009년	2001년	2004년	2002년	2001년
편성목적	-	위원회 간사활동지원 경비	소위원회 운영경비	연구조사, 예비검토, 안건검토 경비	국회 운영협의 등 경비	기관 홍보, 행사 등 기관운영 경비

자료: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자료 및 국회사무처 제출 자료 재구성

[별표 7]

국회입법조사처의 2012년도 특정업무경비 실비 집행 현황

(단위: 천 원, %)

구분	계(비율)	기관운영 업무수행 경비	입법조사 활동비
예산액	46,000	10,000	36,000
집행액	46,000	10,000	36,000
- 카드영수증 등 증빙	-	-	-
- 지출내역서만 구비	46,000(100)	10,000	36,000
- 현금수령증만 구비	-	-	-
지급개시연도	-	-	-
편성목적	-	입법조사처 기관운영 경비	법령 및 제도개선 입법조사 경비

자료: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자료 및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자료 재구성

[별표 8]

국회입법조사처의 2013년도 1/4분기 특정업무경비 실비 집행 현황

(단위: 천 원, %)

구분	계(비율)	기관운영 업무수행 경비	입법조사 활동비
예산액	19,000	10,000	9,000
집행액	14,000	5,000	9,000
- 카드영수증 등 증빙	-	-	-
- 지출내역서만 구비	14,000(100)	5,000	9,000
- 현금수령증만 구비	-	-	-
지급개시연도	-	-	-
편성목적	-	입법조사처 기관운영 경비	법령 및 제도개선 입법조사 경비

자료: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자료 및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자료 재구성

[별표 9]

국회도서관의 2012년도 특정업무경비 실비 집행 현황

(단위: 천 원, %)

구분	계(비율)	입법조사 지원 활동비	입법연구 및 자료조사 활동비
예산액	48,000	36,000	12,000
집행액	48,000	36,000	12,000
- 카드영수증 등 증빙	-	-	-
- 지출내역서만 구비	48,000(100)	36,000	12,000
- 현금수령증만 구비	-	-	-
지급개시연도	-	-	-
편성목적	-	입법조사 활동 지원 경비	입법연구 및 자료수집·관리 등 활동 경비

자료: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자료 및 국회도서관 제출 자료 재구성

[별표 10]

국회도서관의 2013년도 1/4분기 특정업무경비 실비 집행 현황

(단위: 천 원, %)

구분	계(비율)	입법조사 지원 활동비	입법연구 및 자료조사 활동비
예산액	21,000	9,000	3,000
집행액	11,000	8,000	3,000
- 카드영수증 등 증빙	-	-	-
- 지출내역서만 구비	11,000(100)	8,000	3,000
- 현금수령증만 구비	-	-	-
지급개시연도	-	-	-
편성목적	-	입법조사 활동 지원 경비	입법연구 및 자료수집·관리 등 활동 경비

자료: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자료 및 국회도서관 제출 자료 재구성

[별표 11]

개인별 월정액 한도 초과 특정업무경비 지급 현황

(단위: 천 원, 명)

연번	항목	예산액 (2013년 기준)	인원 (A)	1인당			초과액 계 (C=A×B×12)
				치안활동비 미포함 지급액	치안활동비 포함 지급액	30만 원 초과액(B)	
1	예산편성자료수집활동비	54,000	10	250	420	120	14,400
2	법령자료수집활동비	21,600	9	200	370	70	7,560
3	경찰대학감찰활동비	1,800	1	150	320	20	240
4	생활안전요원활동비(본원)	34,200	18	150	320	20	4,320
5	생활안전요원활동비(일선)	8,103,200	2,897	200	370	70	2,433,480
6	생활질서요원활동비(본청)	43,200	10	300	470	170	20,400
7	생활질서요원활동비(일선)	3,667,680	1,110	250~300	420~470	120~170	846,240
8	지하철요원활동비	666,200	156	300	470	170	318,240
9	지역경찰활동비	96,015,200	40,090	200	370	70	33,675,600
10	여성청소년요원활동비(본청)	75,600	28	190	360	60	20,160
11	여성청소년요원활동비(일선)	7,561,440	2,435	250~300	420~470	120~170	3,762,840
12	범죄수사지도활동비	802,000	210	300	470	170	428,400
13	수사정보수집비	63,954,240	18,500	250~300	420~470	120~170	34,404,000
14	뺑소니수사요원활동비	1,944,000	600	270	440	140	1,008,000
15	교통요원활동비	22,561,200	9,376	200	370	70	7,875,840
16	경비요원활동비	11,163,800	885	140~250	310~420	10~120	369,640
17	경호대운영	1,653,240	35	140~160	310~330	10~30	5,640
18	전의경 지위관리	2,645,720	187	150~180	320~350	20~50	47,760
19	특공대운영	1,051,200	365	240	410	110	481,800
20	항공요원활동비	153,600	13	200	370	70	10,920
21	감찰감사요원활동비(본청)	225,082	68	300	470	170	138,720
22	감찰감사요원활동비(일선)	2,464,200	1,277	150~200	320~370	20~70	434,880
총계		224,862,402	78,280				86,309,080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

[별표 12]

중앙관서별 집행계획 통보 현황

연번	기관명	2011년	2012년	2013년
1	특임장관실	통보	미통보	미통보
2	국세청	미통보	미통보	통보
3	법무부	통보	통보	통보
4	대검찰청	미통보	미통보	미통보
5	안전행정부	통보	미통보	통보
6	경찰청	통보	통보	통보
7	소방방재청	통보	미통보	미통보
8	농림축산식품부	미통보	통보	미통보
9	감사원	미통보	미통보	미통보
10	헌법재판소	통보	통보	통보
11	대법원	미통보	통보	통보
12	국회	미통보	미통보	미통보
통보 기관 수		6개 기관	5개 기관	6개 기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